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19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빈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8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근무경력 거짓신고)
김○기	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이하 생략	업무정지 12개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임○빈	근무경력 거짓 신고 - 토옹이앤씨(1998.8.31.~) 등 2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3]
김○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 중증치료병동 신축공사(2021.7.31., 2021.8.28.)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11. 14.(화)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